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건강등급 적용 특약

2. 건강등급에 관한 사항

가. “건강등급”은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하 “건강등급”이라 한다)

나.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강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하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라 한다)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을 통해 산출된다.

다. ‘나’에 따라 건강등급 산출 시 최근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중 가장 최신 결과(다만,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없거나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및 직전 2개월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의 의료이용기록 등이 사용되며,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 BMI, 혈압(수축기/이완기),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청크레아티닌, 간기능 수치(ALT, 감마GTP), 내원일수, 총 급여비용, 흡연여부 등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시스템 상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등급은 유효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은 ‘0등급’으로 산출된다.

마. 건강등급은 ‘5. 청약 시 건강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건강등급을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바. ‘마’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5. 청약 시 건강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 및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

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보험자의 범위, 적용 대상 및 보험기간

가.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인수기준을 충족한 경우
- 2) 당사의 청약 절차 중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한 경우

나. 적용 대상 및 보험기간

- 1) 적용대상: 주계약 청약 시 이 특약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한 계약
- 2)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한다.

다. 건강등급 적용여부의 변경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청약 시 선택한 건강등급 적용여부를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2) 청약 시 건강등급 적용을 선택한 계약이 ‘1)’에 따라 건강등급 적용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이 완료된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건강등급 및 건강등급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건강등급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3) 청약 시 건강등급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이 ‘1)’에 따라 건강등급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신청 이후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건강등급이 적용된다.
- 4) ‘3)’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따라 이미 선납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선납보험료의 최종납입월 이후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건강등급이 적용된다.

4.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에 따라 “건강등급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의 영업보험료를 할인한다.

- 나. 이 특약에서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 및 “건강등급별 할인율”은 ‘[별첨 1] 할인 대상상품 및 할인율’을 따른다. 다만,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 중 선택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상이한 선택특약은 “건강등급 대상상품”에서 제외한다.
- 다. ‘가’ 및 ‘나’에 따른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은 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입원, 질병수술과 관련된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선택특약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담보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대상상품에서 제외한다.
- 라.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건강등급을 재산정하며, 건강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강등급을 기준으로 영업보험료를 할인한다.
- 마.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5. 청약 시 건강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

- 가. 주계약 청약 시 이 특약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청약일까지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청약 시 적용하는 건강등급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6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으로 적용한다.
- 나. ‘가’에 따른 건강등급은 청약일부터 적용하며,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다음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적용된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아 ‘가’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하여 건강등급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청약 완료 이후 피보험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건강등급 산출 방법 및 청약 이후 건강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한(이후 “산정기한”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한다.
- 라. ‘다’의 “산정기한”이라 함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날로부터 15일과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직전 2영업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 마. ‘다’에 따라 건강등급의 산출이 필요한 피보험자는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는 제2회 보험료부터 건강등급을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은 0등급으로 적용된다.

바. ‘마’에 따라 건강등급이 적용되어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용된 건강등급 및 변경된 보험료에 대해 안내한다.

사. ‘다’ 내지 ‘마’에도 불구하고,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

가. 건강등급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을 주기로 재산정하여 변경 적용하며, 피보험자는 매년 연계약해당월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재산정 기간”이라 한다)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한다.

나. 회사는 매년 “재산정 기간”이 도래하면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건강등급 재산정일” 직전 1개월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안내한다.

- 1) 건강등급 재산정 기간
- 2) 건강등급 산출 방법
- 3) 건강등급 변경 시 적용되는 할인율
- 4) ‘바’에 따라 건강등급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

다.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연계약해당월의 첫 번째 날(1일)(이하 “건강등급 재산정일”이라 한다)에 건강등급을 변경적용하며, 변경된 건강등급은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라.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나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이 있는 경우,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을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등급 및 변경된 보험료에 대해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안내한다.

바. ‘가’ 내지 ‘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며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

하여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이 없는 경우, 건강등급은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사. ‘가’ 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 이 모두 보험료 납입 면제된 경우, 건강등급 재산정 대상 계약에서 제외된다.

7. 보험료 선납 시 건강등급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이 적용된 계약은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선납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의 보험료를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납할 수 있다.

나. ‘가’ 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건강등급은 선납 시점의 건강등급을 적용한다.

8.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건강등급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주계약 약관(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른 부활(효력회복) 계약에서 연체보험료 및 부활(효력회복)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에 적용하는 건강등급은 각 보험료 납입해당일의 유효한 건강등급으로 한다.

나.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점에 유효한 건강등급이 없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 피보험자는 ‘5. 청약 시 건강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 ‘가’ 내지 ‘나’ 에 따라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산출한 건강등급은 부활(효력회복)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다. ‘가’ 내지 ‘나’ 의 유효한 건강등급이란, ‘5. 청약 시 건강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 및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최초 청약 시 또는 건강등급 재산정 기간에 산출하여 적용된 건강등급을 말한다.

9.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 와의 계약해지,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 의 파산선고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의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건강등급의 산출 및 건강등급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계약별로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 1) 회사 자체적으로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 개발하여 운영
 - 2) 건강등급 산출 불가 시점에 적용 중인 건강등급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건강등급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일괄 적용
- 나. 회사는 ‘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한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한다.
- 1) 건강등급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
 - 2) 건강등급 제도의 운영 여부 및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
 - 3)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료
 - 4) 기타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 다. ‘가’의 ‘1)’의 방법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건강등급 산출방법, 산출 기준 및 재산정과 관련된 사항. 건강등급별 할인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 및 의료이용기록 등 건강등급 산출을 위해 필요한 최신 건강정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회사가 ‘다’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후 ‘다’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건강등급을 적용한다.
- 마. 회사는 ‘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출한 자료를 건강등급 산출에 사용하며, 건강등급 산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0. 기타 사항

- 가. 회사는 청약철회나 승낙거절 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일반적인 청약 프로세스를 준용하여 청약 시점에 수집한 건강등급 관련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
- 나. 이 특약은 건강인우대특약(건강인우대특약에 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특약도 포함한다)과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
- 다.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한 계약에 한하여 건강등급별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계약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한 확인("[별첨2] 건강등급 적용 상품 가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참조)을 받아야 한다.
- 라. ‘6. 건강등급 재산정에 관한 사항’ ‘가’ 및 ‘다’에서 정한 “건강등급 재

산정일” 및 “재산정 기간”은 부활(효력회복) 또는 갱신되는 경우(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한함)에도 변경되지 않는다.

- 마. 이 특약은 기초통계 수집·집적을 목적으로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건강등급에 따른 영업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향후 적정 기초통계가 집적된 경우 해당 기초통계에 근거하여 별도의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별첨1]

할인 대상상품 및 할인율

※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은 아래와 같으며, 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입원, 질병수술과 관련된 담보를 보장하는 상품(선택특약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담보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대상상품에서 제외한다.

※ 건강등급 할인은 계약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대상상품	건강등급	할인율	
		주계약	선택특약
무배당 ABL 건강하면 THE 소중한중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무배당 ABL건강드림선지급GI중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등급	8.0%	10.0%
	2등급	7.0%	7.0%
	3등급	5.0%	5.0%
	4등급	3.0%	3.0%
	5~9등급, 0등급 ^{주1)} , 등급정보 없음 ^{주2)}	-	-
무배당 ABL인터넷네개딱!패키지건강보험(갱신형)	1등급	-	15.0%
	2등급	-	9.0%
	3등급	-	6.0%
	4등급	-	3.0%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무배당 ABL인터넷정기보험	1등급	8.0%	-
	2등급	7.0%	-
	3등급	5.0%	-
	4등급	3.0%	-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무배당 ABL인터넷암보험Ⅲ(갱신형)	1등급	15.0%	15.0%
	2등급	9.0%	9.0%
	3등급	6.0%	6.0%
	4등급	3.0%	3.0%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무배당 우리WON하는5대미니암보험	1등급	15.0%	-
	2등급	9.0%	-
	3등급	6.0%	-
	4등급	3.0%	-
	5~9등급, 0등급, 등급정보 없음	-	-

주1) 0등급: 피보험자의 건강등급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건강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2) 등급정보 없음: 피보험자가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거나, 건강등급 미적용을 선택한 경우

[별첨2]

건강등급 적용 상품 가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1.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산출한 “건강등급”을 적용하고, “건강등급”에 따라 영업보험료의 할인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2. 이 보험은 매1년 주기로 건강등급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건강등급 “재산정 기간” 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거나 “건강등급 재산정일”에 건강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건강등급에 따른 할인이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아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등급 산출 시 최근 1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중 가장 최신 결과(다만,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없거나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및 직전 2개월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의 의료이용기록 등이 사용되며,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 BMI, 혈압(수축기/이완기),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청크레아티닌, 간기능 수치(ALT, 감마GTP), 내원일수, 총 급여비용, 흡연여부 등

<건강등급별 보험료 비교(예시)>

구분		기본 보험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외 등급 또는 미산출
할인 율	주계약	X.XX%	X.XX%	X.XX%	X.XX%	X.XX%	X.XX%
	특약	X.XX%	X.XX%	X.XX%	X.XX%	X.XX%	X.XX%
주계약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특약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합계보험료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XX,XXX 원

- 유의사항: 갱신형 보험의 경우 갱신 전후 건강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령 및 위험률의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_____ (인/서명)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 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_____ (인/서명)